

1. 선박제원		(기재번호 : 1)
기재항목	기재사항	
선박명	파라다이스호	
선박번호	MPR - 962285	
총톤수	309 톤	
건조일자	1994.04.20	
진수일자	1994.03.01	
선적항	목포시	
선질	알루미늄 합금	
선박용도	초고속 쌍동 여객선	
등록치수(길이×너비×깊이)	38.00 m x 10.10 m x 3.97 m	
기관종류 및 출력	MTU 디젤 엔진 1,980 Kw x 2 대	
최대승선인원	총 380 명 (여객 : 375 명, 선원 : 4 명, 임시승선자 : 1 명)	
선박소유자	(주) 동양고속훼리 (국적 : 대한민국)	
운항사업자	(주) 동양고속훼리 (국적 : 대한민국)	
선박국적	대한민국	
기재일자	2016 년 06 월 20 일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사업자 : (주) 동양고속훼리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기재번호 : 1)


기재항목	기재사항
선박의 도입	
매수일자	2007 년 08 월 28 일
매 도 자	우리고속훼리(주) (국적 : 대한민국)
신조선 · 중고선 여부	중고선
선박 도입 당시 선령	13 년
선박의 매매	
매도일자	년 월 일
매 수 자	(국적 :)
기재일자	2016 년 06 월 20 일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사업자 : (주) 동양고속훼리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기재번호 : 1)
기재항목	기재사항	
항로명	1, 목포-홍도 2, 목포-소흑산도(가거도)	
출발지/기항지/종착지	1, 목포-비금/도초-흑산도-홍도 2, 목포-비금/도초-다물도-흑산도-상, 중태-하태-만재도-소흑산도(가거도)	
운항기간	2007년 08월 31일부터 ~ 현재까지 운항 중	
기재일자	2016년 06월 20일	
<p>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p> <p>사업자 : (주) 동양고속훼리</p>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기재번호 : 1)
기재항목	기재사항	
건조검사 / 정기검사 / 제1종 중간검사 / 제2종 중간검사 / 임시검사		
검사일자	2017년 01월 18일 ~ 2017년 03월 06일	
검사기관	(사) 한국선급	
검사자	수석 검사원 : 김진호(갑판) / 임종열(기관)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기재일자	2017년 03월 17일	
<p>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p> <p>사업자 : (주) 동양고속훼리</p> 		

5. 해상사고 이력

(기재번호 : 1)

※ 「해상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사고

해양 사고 종류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기재항목	기재사항
사고일자	* 해당사항 없음
해양사고 종류	* 해당사항 없음
사고장소	* 해당사항 없음
사고경위	* 해당사항 없음
피해규모	* 해당사항 없음
기재일자	2016 년 06 월 20 일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사업자 : (주) 동양고속훼리



6. 선박개조 이력

(기재번호 : 1)

※ 「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

기재항목		기재사항
선박구조 등 변경 허가일자		* 해당사항 없음
허가자		* 해당사항 없음
변경내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변경 후	* 해당사항 없음
기재일자		2016 년 06 월 20 일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사업자 : (주) 동양고속훼리



※ 변경사항 표시 도면 및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첨부

기재 시 참고사항

1. 이 서식의 기재사항은 사업자 외의 자가 수정·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내용은 한글(필요시 영문 병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 작성 후, 각 호의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부여하여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한다.

3.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새로운 기재번호를 부여하고,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재번호 예시 : 1, 2, 3, ~

4. 선박명(선박번호)의 변경으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를 새로 작성할 경우 위 2내지 3의 방법을 따르되 제1쪽에 변경된 선박명(선박번호) 및 사유를 기록한다.

※선박번호는 국적증서상의 숫자 여섯 자리만 기록한다.

5. 사업자는 선박 및 사무소에 최초 및 개정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기록·보관하여 개정내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해 근거가 되는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